

창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나57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나57417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3972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B

2. 대한민국

변론 종결2017. 8. 9.

판결 선고2017. 9. 20.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397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사천시 C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9.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야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D(1930. 10. 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17. 12. 10.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고, 망인의 상속재산은 장남인 피고 B이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1982. 9. 20.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사천시 E 목장용지 19,999m²(이하 '연접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2. 10. 4. 접수 제124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당심 법원의 H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F(1971. 3. 31. 사망)은 1956년 5월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는 망 F 사망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관리하면서 1970년경에는 감나무를 식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1982. 9. 20. 연접 토지를 매수하여 목장을 조성,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목장 운영에 필요한 사료 저장소, 목초지로 사용하거나 밭으로 개간하여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1982. 9. 20.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가 연접 토지를 매수한 1982. 9. 20.부터 20년이 지난 2002. 9.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을 대위한 원고에게 미등기 상태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주소 중 지번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임야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전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가 연접 토지를 매수한 1982. 9. 20.부터¹⁾ 이 사건 임야 전부를 20년간 계속해서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한국수목평가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수목등배치도 기재 발작물재배구역 17m²(이하 '이 사건 밭 17m'라 한다)에서 감자 등 발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밤나무, 감나무가 식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을 제3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당심 법원의 한국수목평가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982. 9. 20.부터 20년 이상 계속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벼짚을 적재하여 사료를 만들고 저장하였는데, 그 장소는 사료를 운반하기 좋은 도로와 접한 토지라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고 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격되어 있으므로 G이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퇴비야적장으로 사용하며 점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별지 수목등배치도상 원고 주장의 퇴비야적장은 이 사건 임야가 아닌 경남 사천시 J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감자를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I 역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밭이 된 지 40년이 넘었고, 약 35년 정도 전부터 감자를 경작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도로에 인접한 밭에서 감자가 경작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국수목평가연구소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그 경작지 면적이 이 사건 밭인 17m²로 이 사건 임야 면적인 1,289m²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④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망 F이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밤나무의 수령이 최대 37년, 원고가 1970년경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감나무의 수령이 최대 34년인데, 밤나무는 망인이 사망한

1971년보다 뒤인 1980년대에 식재된 것으로 보이고 감나무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뒤인 1983년 이후에 식재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마. 다만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밭 17㎡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밤나무, 감나무가 식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지 살피건대, 1필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하는 바(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특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제시한 각 항공사진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이 사건 임야 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감자밭의 형태가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밭 등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관련한 나머지 요건 사실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참조).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중래

판사이호선

판사김재운

별지

1)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망인에게 사정된 뒤 피고 B이 상속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바 없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F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뒤 사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관리하였고 연접 토지를 매수한 1982. 9. 20.을 점유개시 시점으로 삼아 그때부터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판단한다.